2017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7년 6월 22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전 승 철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장 민 조사국장

신 호 순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환 석 금융시장국장 이 승 헌 국제국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병 희 공보관

이 동 원 의사팀장

6. 회의경과

<의안 제21호 -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6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6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보고서의 사전심의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방식에 있어 개선사항과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및 보완·수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보고서의 사전심의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행내 인식 공유 확대, 보고서 내용의 사전 검증 등을 위해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보가 주관하고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거시건전 성 협의회를 위원협의회에 앞서 개최하였음. 둘째, 종전과 달리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당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국회 앞 제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갖기로 하였음.

다음으로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의 체계는 지난해 12월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의 부문별 상황을 취약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우리경제의 대외지급능력을 살펴보는 방식을 유지하였음. 보고서의 본문, 참고자료, 현안분석 등 전반에 걸쳐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의 상황, 누증요인, 금리 상승시의 영향, 그리고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와 함께 지난 수년간 저금리 상황에 적응해 왔던 경제주체들이 향후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도 강화하였음.

이어서 지난 6.8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전반적으로 잘 평가하였으며 시의성 있는 주제들도 많이 다루었다고 언급하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들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제반 리스크가 억눌려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음. 특히 최근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변동성 측면에서 낮아져 보이지만 수준 자체는 높은 상태일수 있으며, 향후 금리상승 등 국면 전환시 신용 또는 유동성 리스크가 현실화될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금융안정 상황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들은 금융기관간 상호 연계성을 통한 횡단면 측면의 리스크를 분석함에 있어 양쪽 측면의 분석과 함께 대내외 충격으로 인한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업권간 어떻게 파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시계열 측면이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금융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분석도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금번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가계대출 차주의 신용등급 고평가, 부동산 익스포저(exposure)의 급증, 비은 행금융기관의 수익추구 강화 등의 내용을 금융의 경기순응성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다음으로 복원력 부문에서 일부 위원은 은행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stress test)를 실시할 때 금리상승 이외에 주택가격 하락 시나리오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기관의 부동산익스포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잠재 리스크가 무엇인지 추가로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율 하락에 따른 신용등급의 추세적 상승 현상이 우리나라 신용평가 체계의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대안 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현안분석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의 누증 요인을 저금리, 부동산규제 완화 등 경제정책 기조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 주택시장의 수 급구조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분석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만, 일부 위원들은 최근 2~3년간의 가계부채 누증이 신규주택 분양시장의 호조, 공적보증의 확대 등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일부 위원들은 가계대출에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됨으로써 은행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이 높아졌다는 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라는 견해 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년 들어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신용 증가세도 둔화되는 모습인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대책이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한 8월에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행도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대책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8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계부 채관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금번 LTV·DTI 강화 조치와 함께 향후 DSR 규제가 도입되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뿐만 아니라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낮추려는(DSR비율 하락) 차주의 장기대출 수요 확대로 가계부채의 구조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는 가계부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더라도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입장에서는 만기불일치 위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장기 모기지(mortgage) 시장을 발전시켜 가계의 금리위험과금융기관의 만기불일치 위험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과거커버드본드(covered bond) 시장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진전사항이어떠한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커버드본드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예전부터 있었으나 아직 활발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공적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주택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할 경우 커버드본드와 같은 민간 모기지 시장의 자생적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 시계에서 주택금융 인프라 관련 연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LTV·DTI 등 부채 관련 규제수단을 보다 체계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수립 및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방안과 함께 관련정책을 금융순환 국면 등과 연계하여 일정부분 준칙에 따라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개선 및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완화적 금융기조 하에서는 금융환경을 둘러싼 잠재 리스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주택시장의 경우 인구고령화, 은퇴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을 감안할 때 공급규모에 비해 실질수요가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과 금융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자영업자 대출은 자영업 시장의 과도한 경쟁 등을 감안할 때 대출 건전성이 언제든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수급 상황과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어서 동 위원은 최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증권투자가 활발한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유동성 감소 및 미 연준과 시장의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주식, 채권 등 글로벌 금융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조정되는 경우 해 외투자 손실 위험이 커지고, 나아가 국내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고 있 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이 여타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가 가계부채 누증의 구조적 요인과 일반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변화와 같은 시의성 있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 유용한 분석을 많이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금융안정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안에 대한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영업행태에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또한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의 향방이 중요한데 그간 주택 및 주택금융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적편익뿐만 아니라 비용도 발생하였는데, 현 시점에서 관련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하여 그 효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고 관계당국에 적절한 정책방향을 권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6.19 부동산대책에 이어 8월에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신규주택 분양물량 공급 증가 등 주택시장 의 약세요인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정부대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한편 일부 위원은 보고서가 국내 금융시장의 상황과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하여 첫째, 공적 보증기관의 사업 중 금융기관과 가계의 도덕적 해이를 촉발하여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축소·차단해야 하는 방안, 둘째, 가계부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LTV·DTI·DSR 및 위험가중자산 산정방식 등

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 셋째, 금리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세 번째 대응방안은 가계부채 이외에 경기 및 인플레이션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선 두 정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더욱이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우려해야 할 사항은 상환능력이 충분한 가계의 합리적 판단에 의거한 가계부채가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시장왜곡에 의해 증가하는 가계부채라는 점에서 공공정책의 규율과 금융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관계당국과의 협의시 이러한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일부 위원은 보고서 체계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 보고서가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의 산물이며 통화정책 의결문의 확장판으로서 중요 하게 인식되는 것처럼, 금융안정보고서 역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 점검 회의 의 결과물이어야 하며 이러한 선상에서 보고서의 개황부문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과 평가, 시사점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보고서의 현안분석과 관련하여 2015년 이후 가계부채 누증의 주요 요인으로 저금리, LTV·DTI 규제 완화, 공적보증 확대 등 당시의 완화적정책 환경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으나,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이로 인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추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한 가계부채 누증의 구조적 요인으로 제시한 인구구조와 관련해서는 긴 시계에서 보면의미가 있겠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60대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적극차입 연령층인 30~50대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동 분석의 설명력이 낮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2년간의 가계부채 급증은 저금리를 포함한 경제정책 기조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따라서 차기 회의에서는 동 사항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가계부채 관련 이슈로서 신규주택 분양시장의 구조, 미시데이터를 이용한 연령별부채구조 등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6월)(안)(생략)